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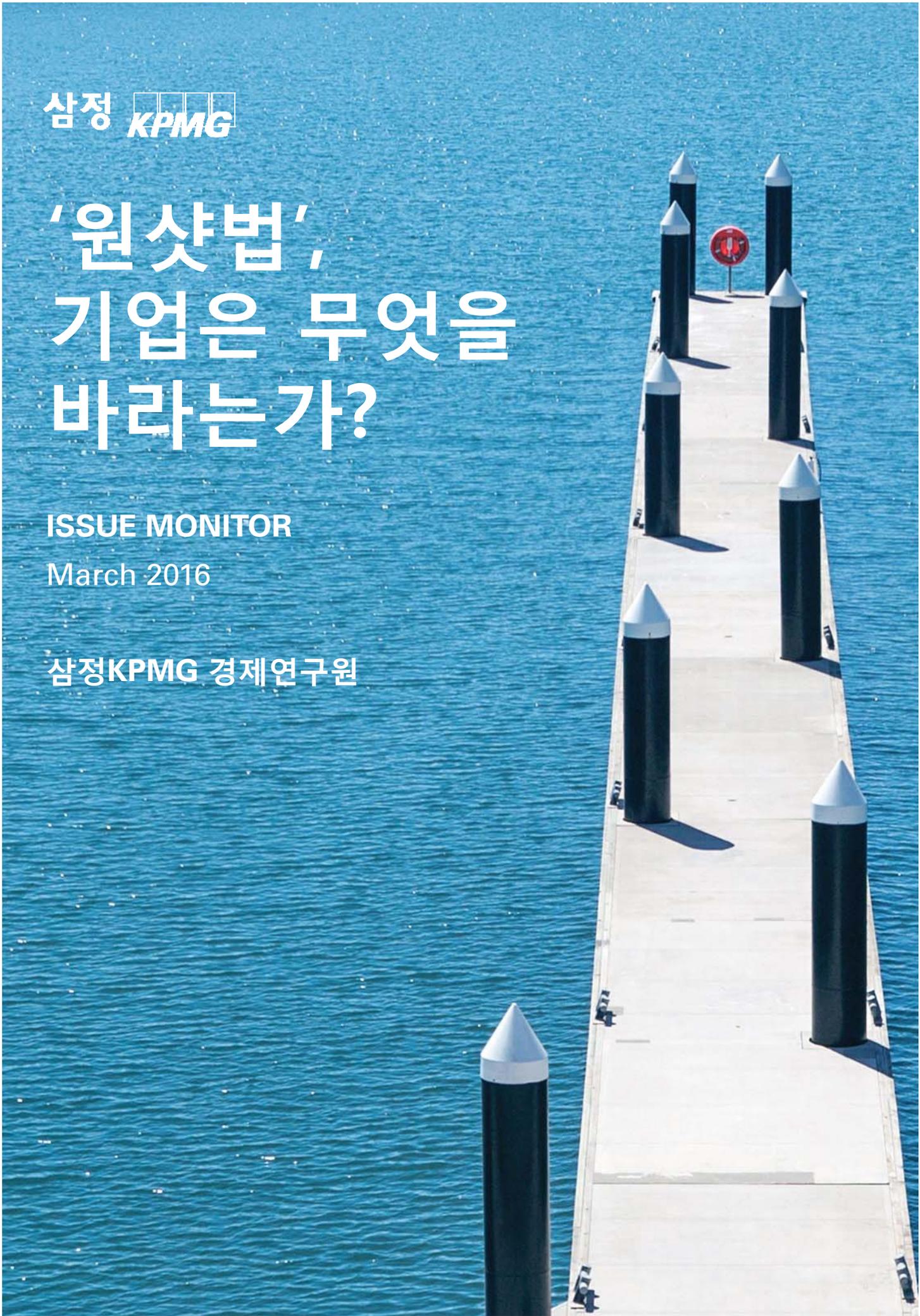
삼성 KPMG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ISSUE MONITOR

March 2016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ents

	Page
Executive Summary	3
국내 '원샷법'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4
연구방법	6
'원샷법' 도입에 대한 기업의 반응	7
(1)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7
(2) '원샷법' 도입의 파급 효과	8
(3) 위협요소	9
(4) 기회요소	10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
정책적 시사점	12
Appendix	14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주)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는 해당 분야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고, 수요둔화 및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내 주요 산업들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쟁점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내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본 특별법이 2016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원샷법' 도입에 대한 산업의 반응을 파악하였다. 기업들이 인식한 파급영향, 기회요소, 위협요소, '원샷법'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 국내 '원샷법'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 국내외 경기부진에 따른 한계기업 수 증가
- 국내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계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 제기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6년 2월 12일 공포되었고, 2016년 8월 시행을 앞둠

■ 연구방법

- '원샷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반응 및 파급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산업 내 재무 및 기획실의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 진행
-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건설, 전자, 물류, 금융, 엔지니어링 산업에 걸쳐 기업 내 재무 및 기획실 의사결정권자로 구성되었고, 경제전문가와 회계 및 M&A 전문가를 인터뷰 대상에 포함시킴

■ '원샷법' 도입에 대한 기업의 반응

- (1)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 : 주요 기업들은 한국의 주력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인식하였고, 이유로는 첫째,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약세, 둘째, 글로벌 수요 둔화, 셋째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꼽았다. 그 밖에도 국제유가 하락 및 국내 소비 둔화를 꼽음
- (2) '원샷법' 도입의 파급 효과 :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원샷법' 도입이 한국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존재한다고 보고 있었고, 나아가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
- (3) 위협요소 : 기업들은 고용불안정성, 기업정보 유출, 인위적 시장개입, 국내 산업 위축, 경기회복지연 등의 위협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
- (4) 기회요소 : 기업들은 경영 정상화, 세제 및 자금지원, 계획된 M&A 촉진, 기술 M&A 확대 등의 기회요소가 상존할 것이라고 판단
-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원샷법'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기업들이 자발적 구조조정을 하는데 가장 큰 혜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세제혜택' 이었고, 다음으로는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 절차간소화, 신산업진출 규제 애로 해소를 주요한 혜택으로 꼽음. 한편,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는 방향성, 의견수렴, 절차간소화, 고용안정성 제고, 자금지원 혜택 구체화 등의 개선방향성을 제시

■ 정책적 시사점

- '원샷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점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 기업의 '원샷법'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다양한 혜택을 강조하고, 본 제도의 목적이 구조조정 그 자체가 아니라,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두는 등 정책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 요구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국내 '원샷법'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국내외 경기부진에 따른 한계기업 수 증가

한국은행이 2015년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국내 한계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2.8%(2,698개)에서 2014년 15.2%(3,295개)까지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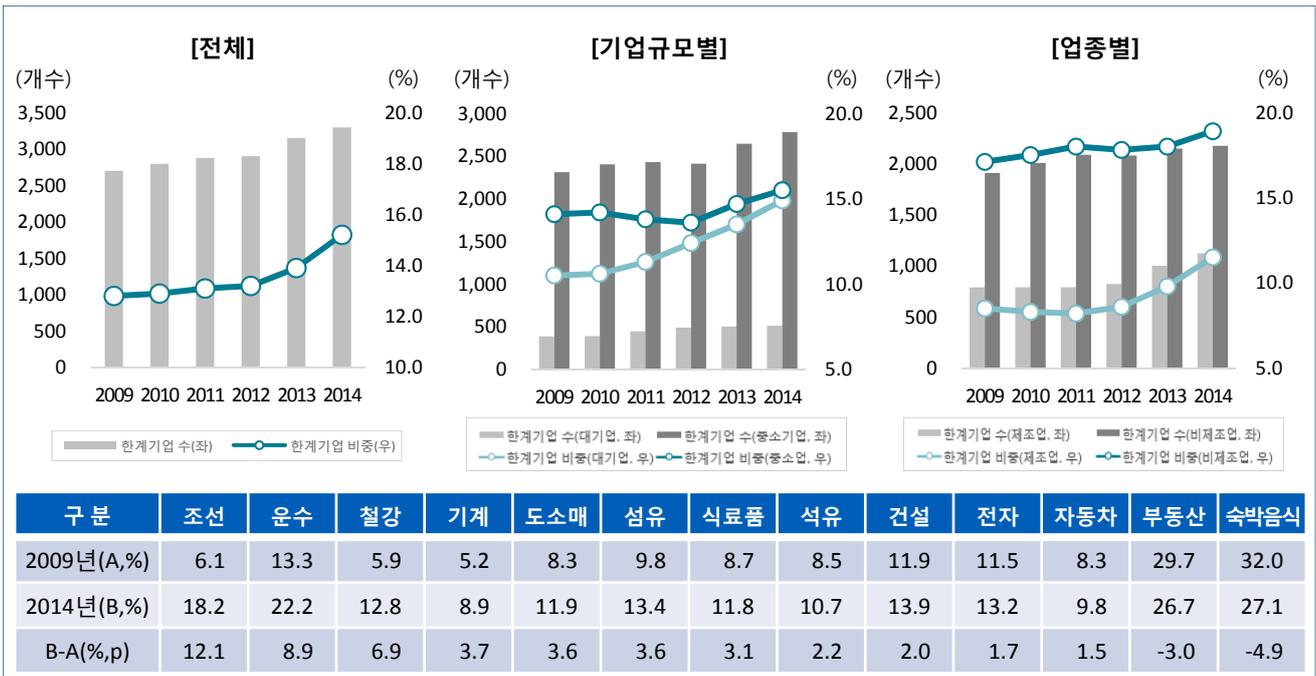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 지속
→ 한계기업 수 급증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여 2014년에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인 15.3%에 거의 근접한 14.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비제조업보다 빠른 상승세가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조선, 철강 등의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였고, 비제조업에서는 운수, 도매업 등의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低)금리 상황을 바탕으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과다한 부채에 의존해 생존을 이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부채 증가를 통해 생존을 이어가는 한계기업이 많아질수록 전체적인 수익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 기업규모 및 업종별 국내 한계기업 현황 >



Source: 금융안정보고서(2015.06), 한국은행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국내 기업의 실적부진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및 글로벌 과잉공급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향후에도 수익성 악화와 성장 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계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 지원 필요

그러나 현행 제도들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더디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상기업의 선제적·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기업 부실이 현실화 된 이후 사후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된다.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기업 >

구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법적 공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통합도산법
신용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대상기업	정상기업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Source: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공청회 자료(2015.10.13)

그 동안 경제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벤치마킹하여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발의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일명 '원샷법')되어 2016년 2월 12일 공포되었다. 2016년 8월 시행되는 본 법은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와 세제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어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년 한시의 특별법이다.

본 연구는 '원샷법' 도입에 대한 산업의 반응 및 그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원샷법'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연구방법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기업의 반응 분석

본 연구는 '원샷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반응 및 파급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산업 내 재무 및 기획실의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의서는 기초질의, 파급효과, 기회 및 위협요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대상자는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건설, 전자, 물류, 금융, 엔지니어링 산업에 걸쳐 기업 내 재무 및 기획실 의사결정권자로 구성되었다. 또한, 국내 산업 및 경제 동향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제분야 연구자와 '원샷법'을 통한 M&A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를 인터뷰 대상에 포함시켰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2016.2.23)'가 개최된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한 기업의 이해가 마련된 시점에 시작하였다. FGI 실행 단계에서는 먼저, 해당 법안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질의서에 기초한 질문을 open question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의 경우 강한 긍정(100%), 중립(50%), 강한 부정(0%) 등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100% 기준으로 답하도록 질의 하였다.

FGI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반응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작성하였다.

“
**주요 산업 내
 재무/기획 의사결정자
 및 경제/회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 실시**

< 연구방법 flow char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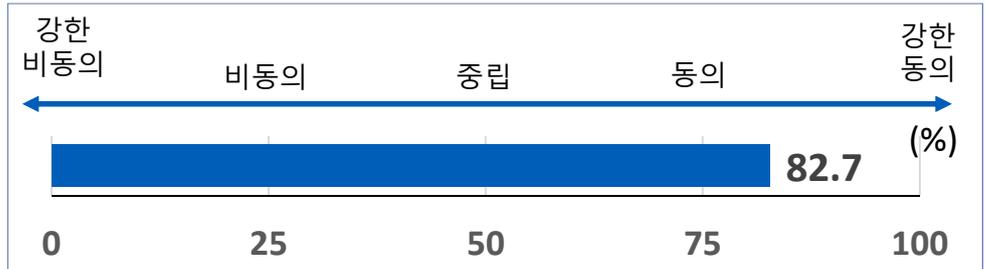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원샷법' 도입에 대한 기업의 반응

(1)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주요 기업들은 한국의 주력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산업이 위기다'라는 점에 동의하는 정도가 82.7%였다.

< 한국의 주력산업에 대해 위기라고 인식하는 정도 >



위기에 처한 한국의 주력산업

한국의 주력산업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첫째,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약세, 둘째, 글로벌 수요 둔화, 셋째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꼽았다. 그 밖에도 국제유가 하락 및 국내 소비 둔화를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주력산업 위기의 배경 >

순위	주요 내용
1위	(중국발)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약세
2위	글로벌 수요 둔화
3위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4위	국제유가 하락
5위	국내 소비 둔화

국내 기업들은 국내 산업이 과잉공급이라고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89.5%의 강한 동의를 나타냈다. 과잉공급과 수요둔화 현상이 두드러진데다가 신흥국의 기술추격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판단된다.

< 국내 산업이 과잉공급이라고 인식하는 정도 >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2) '원샷법' 도입의 파급 효과



'원샷법' 도입은 한국경제 회복에 다소 도움을 준다고 인식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원샷법' 도입이 한국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존재한다고 보고 있었다. 과잉공급 업종을 중심으로 M&A가 이루어지면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 경쟁강도가 완화되고,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생산량을 감축하게 되면 한국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탈한 실업자가 타 산업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경제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기업들은 '원샷법' 도입이 산업 경쟁력을 다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세계 1위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평균적으로 현재 77.2라고 인식했다. '원샷법'을 도입해 과잉공급 현상이 다소 축소될 경우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약 79.7 수준으로 약 2.5p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샷법' 도입으로 한국의 산업경쟁력 회복에 기대

조선, 철강, 물류 산업의 경우 '원샷법'이 도입되어도 산업경쟁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해운, 석유화학, 건설, 전자, 금융, 엔지니어링 산업은 다소나마 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다.

< '원샷법'도입 전후 산업경쟁력 변화에 대한 인식수준 >

산업	도입 전		도입 후	차이
조선	95	원샷법 도입	95	0
철강	90		90	0
해운	30		35	+5p
석유화학	90		92	+2p
건설	80		82	+2p
전자	90		95	+5p
물류	70		70	0
금융	80		85	+5p
엔지니어링	70		73	+3p
평균	77.2		79.7	+2.5p

주: 세계 1위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100이라고 가정할 경우, 해당 산업의 경쟁력 수준 인식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3) 위험요소

과잉공급의 문제는 글로벌 과잉공급이지 국내 과잉공급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 즉, 국제적으로 과잉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급을 축소할 경우 오히려 외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사업재편 심의과정에서 기업의 재편계획이 조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는 산업도 있었다.

지배적인 의견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인위적/강제적 구조조정이 있게 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었다. 조급한 흡수합병이 진행되거나, 기업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닌 인위적 M&A가 발생되어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사회적 공론이나 합의가 충분히 마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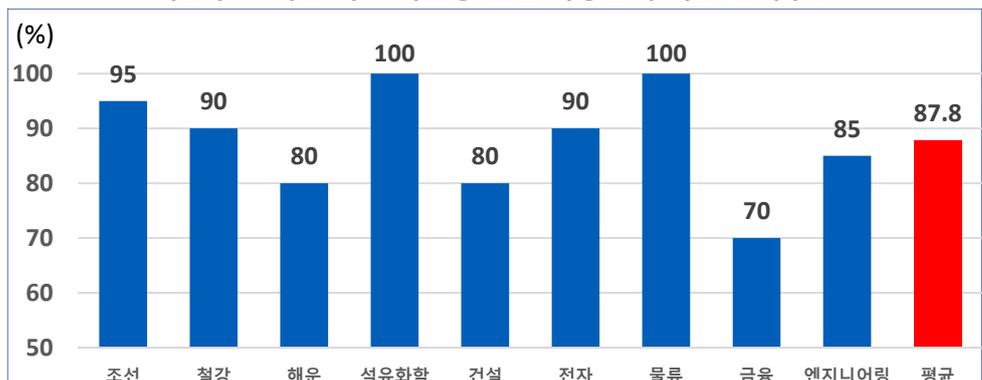
인위적 시장개입에 따른 비효율성 우려

< '원샷법' 도입에 따른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 >

위험요소	내용
고용불안정성	- 사업재편 시 유출되는 인력이 발생 - 노사간의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 경영 지연
기업정보 유출	- 기업의 재편계획이 노출될 위험
인위적 시장개입	- 채권단으로 부터 압박을 받아 조급한 흡수합병 진행 - 인위적 시장개입으로 M&A 대상이 지정되고, 시장왜곡 발생 - 사회적 공론이나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정책으로 기업경쟁력을 악화
국내 산업 위축	- 글로벌 과잉공급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 구조조정으로 국내 산업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 존재
경기회복지연	- 근로불안정성이 높아 소비 축소로 인한 내수기업 타격

기업들은 사업구조 개편 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고용불안정성 등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었다.

< 사업구조 개편 시 노사갈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수준 >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4) 기회요소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낮추어 한계기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경영 정상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를 자사의 핵심경쟁력 분야에만 집중해야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몇몇 산업에서는 사업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게 상당한 세제상의 혜택이 돌아가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에 따른 비용을 축소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원샷법' 도입에 따라 M&A가 활성화 되면, 기술 M&A도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기술벤처 기업들의 출구전략이 가능하다는 인식도 있었다.



M&A를 계획하고 있던 기업들의 경우, 세제혜택, 자금지원 및 빠른 의사결정 등을 기회요소로 인식

< '원샷법' 도입에 따른 기회요소에 대한 인식 >

기회요소	내용
경영 정상화	-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노력 - 산업구조 개편으로 핵심경쟁력 강화 및 효율화 - 부족사업영역을 보완하거나 과잉영역을 정리하여 슬림화
세제 및 자금지원	- 사업재편을 계획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이 상당한 도움 - 사업구조 개편 시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을 통한 비용 축소
계획된 M&A 촉진	- 계획된 M&A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 및 노사갈등 등의 걸림돌을 완화 -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
기술 M&A 확대	- M&A 활성화로 기술벤처 기업들의 출구 전략 가능

더욱이, M&A가 계획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과도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거나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 노사갈등 문제로 인한 사업재편 지연 시 상호간의 이해를 돕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 사업재편 계획 >

방향	산업
'원샷법' 도입과 관계없이 추진할 계획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건설, 금융, 엔지니어링
'원샷법' 조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	전자, 물류

주: 인터뷰 대상자 전원은 각 해당 산업 내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이 계획되어 있을 것으로 인식함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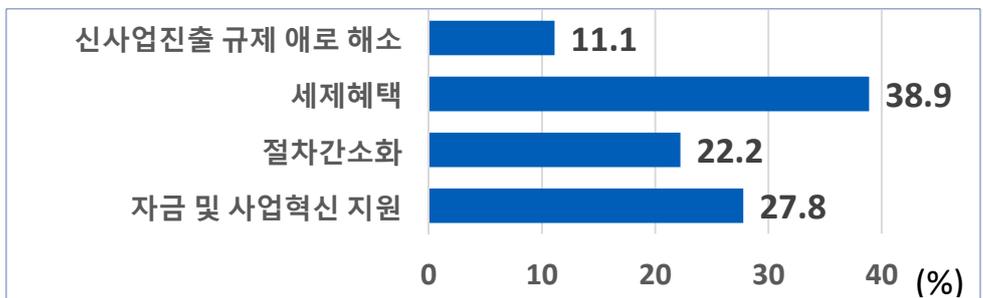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원샷법'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기업들이 자발적 구조조정을 하는데 가장 큰 혜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세제혜택' 이었다. 각 산업 내 의사결정자 및 전문가 그룹의 38.9%가 세제혜택을 가장 큰 혜택으로 인식했다. 다음으로는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27.8%), 절차간소화(22.2%), 신산업진출 규제 애로 해소(11.1%)를 주요한 혜택으로 꼽았다.



세제혜택은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가장 큰 동력

< '원샷법' 도입이 자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주는 가장 큰 혜택 >



각 산업에서는 '원샷법' 도입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이 시행될 경우 효율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첫째, 방향성에 대한 개선이다. 부실기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둘째, 기업이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인위적/강제적이지 않은 자발적 구조조정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과정이 한 단계 추가 되었기 때문에 절차가 오히려 과다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넷째, 노사분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근로자를 타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확보해 고용안정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자금지원에 대해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합병 이후의 이행계획상에서 부족한 자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한다는 등의 구체화된 계획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강화하고, 산업의 의견수렴을 통한 자발적 사업구조 개편을 기대

< '원샷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개선사항	내용
방향성	-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아닌, 경쟁력 강화에 초점
의견수렴	- 의견수렴 또는 사회적 합의 필요
절차 복잡	- 오히려 추가적인 절차(심의)가 추가됨
고용안정성 제고	- 노사분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보
자금지원 등 구체화	- 합병 이후의 이행계획상에서 부족한 자금을 지원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정책적 시사점

장점은 강화하고, 문제점은 개선

'원샷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점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의 '원샷법'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다양한 혜택을 강조해야 한다. 각 산업의 재무관리실 및 기획실에서도 '원샷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해당 법안의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의견수렴과정을 확보한다면 기업의 이해도가 제고되고, 다양한 혜택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정책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원샷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다양한 혜택을 홍보할
필요**

둘째, 본 제도의 목적이 구조조정 그 자체가 아니라,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어야 한다. 기업의 부실사업 영역을 정리하는데 목적을 둘 경우 노사갈등으로 인해 사업재편 속도가 오히려 늦추어 질 수 있다. 더욱이, 구조조정에서 멈추고 사업재편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취업자 수를 축소시키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경기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사업재편의 방향성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사업영역을 정리하고, 앞으로 재편해야 할 유망사업영역에 대해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미래 유망산업 리스트 등을 제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마다 현재의 사업구조 및 핵심경쟁력을 파악하여 맞춤형 유망사업들을 매칭시켜주는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자율적 사업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넷째, 자율적 사업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급과잉의 이슈는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신흥국 공급 과다 등으로 야기된 것으로, 국내 시장의 공급과잉이 아닌 경우가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철강업계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철강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결국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은 타국의 호재이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과잉산업을 정의하고, 한계기업을 선정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된다면, 시장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시장 자율에 맡겨 기업의 필요에 의한 사업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다섯째,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이끄는 주요 요인은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이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해당 지원들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인터뷰 대상 중 한 전문가는 사업재편 및 이행상에 요구되는 자금이 어느 정도 이며, 그 중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명시 필요

여섯째,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시 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고, 노사갈등을 줄여 사업재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재편에 따른 취업자 이동시스템이나 타 산업으로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기업들의 사업영역, 재무상태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사업재편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의도처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반응 및 요구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Appendix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특례 사항 >

분야	지원내용	세부 사항
상법	주주총회 생략	• 소규모분할 도입, 소규모합병 · 간이합병 요건 완화
	조직재편 기간단축	• 주총 소집통지 · 채권자 이의제출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단축
	자금부담 완화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기한 연장
공정거래법	기업결합심사 합리화	• 기업결합심사시 부처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로 마련
	지주회사규제 완화	•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대규모 기업집단규제 완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 · 상호 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세제/자금	세제/자금지원	• 「조특법」 · 「지특법」 상 특례
사업혁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 지원근거 마련	• 국내외 판로개척, 정보 제공, 경영 · 기술 · 회계자문, 판로개척, 전문인력 양성 지원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근로자 능력개발 및 실업예방	•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예방 및 재직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의무 부과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교육 지원
	전직자 지원	• 전직자 재취업 · 창업을 위한 전직지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법령·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	•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주무부처에 법령 · 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여부 확인 요청 가능
	기업제안방식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	• 규제개선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제출시 • 주무부처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

Source: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설명자료(2016.2), 산업통상자원부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

구조조정 & 사업재편

이재현
전무이사
02-2112-0714
jaehyeonlee@kr.kpmg.com

박주흥
상무이사
02-2112-0780
juheungpark@kr.kpmg.com

박현
이사
02-2112-7428
hyunpark@kr.kpmg.com

회계 / 세무 / M&A 자문

강정구
전무이사
02-2112-7629
jeonggukang@kr.kpmg.com

김정
상무이사
02-2112-0993
jeongkim@kr.kpmg.com

윤창규
상무이사
02-2112-0995
changgyuyoon@kr.kpmg.com

지배구조 / 전략수립 자문

한상일
전무이사
02-2112-0832
sangilhan@kr.kpmg.com

오해균
상무이사
02-2112-0887
haegyunoh@kr.kpmg.com

이동석
상무이사
02-2112-7954
dongseoklee@kr.kpmg.com

Deal Advisory

민홍길
상무이사
02-2112-6709
hmin@kr.kpmg.com

고병준
상무이사
02-2112-0742
bgoh@kr.kpmg.com

경제 / 산업 연구

이광열
상무이사
02-2112-0062
kwangryeolyi@kr.kpmg.com

김광석
수석연구원
02-2112-7438
gwangsukkim@kr.kpmg.com

삼정KPMG 경제연구원

- » 김법석 원장 (edwardkim@kr.kpmg.com, 02-2112-0770)
- » 이광열 상무이사 (kwangryeolyi@kr.kpmg.com, 02-2112-0062)
- » 김광석 수석연구원 (gwangsukkim@kr.kpmg.com, 02-2112-6744)
- » 이광용 연구원 (kwangyonglee@kr.kpmg.com, 02-2112-6611)
- » 박경진 연구원 (kyungjinpark@kr.kpmg.com, 02-2112-7469)

kpmg.com/kr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